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354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6. 12.
3. 회 부 일 : 2024. 6.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경비는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되, 해당 선거관리경비는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까지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19대 대통령선거가 궐위선거로 치러져 앞으로 대통령선거의 임기만료 선거일이 12월에서 3월 초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의 배정시기가 편성시기보다 앞서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었음.

이에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 준비경비의 경우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여 선거일 전 120일까지 배정하도록 하고 그 외 선거관리경비는 늦어도 선거일 전 60일까지 배정하도록 하여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준비 경비의 편성·배정시기를 조정함(안 제277조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 등 공직선거 선거관리준비경비의 편성(선거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 →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배정(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 → 선거기간 개시일전 120일)시기를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第277條(選舉管理經費) ①大統領選舉 및 國會議員選舉의 管理準備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各號에 해당하는 經費와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에 관한 事務중 統一的인 수행을 위하여 中央選舉管理委員會 및 市·道選舉管理委員會가 집행하는 經費는 國家가 부담한다. 이 경우 任期滿了에 의한 選舉에 있어서는 당해 選舉의 選舉期間開始日이 속하는 年度(第2號에 해당하는 經費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年度를 포함한다)의 本豫算에 編成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240일)까지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配定하여야 하며, 補闕選舉 등에 있어서는 그 事務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選舉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日[第197條(選舉	第277條(選舉管理經費) ①----- ----- ----- ----- ----- ----- ----- ---. ----- -----해당 선거----- -----연도(제1호 중 선거 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와 제2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 ---선거일 전 60일(제1호 중 선거 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 제2호--- ----경비는 해당 선거----- ----- ----- -----

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舉)의 再選舉에 있어서는 그 사유확정일부터 5日을, 延期된 選舉와 再投票에 있어서는 늦어도 選舉日公告日前日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까지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配定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② ~ ⑤ (생략)	----- ----- ----- ----- ----- -----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현행법 제277조제1항¹⁾은 임기만료에 따른 공직선거 관리경비는 기본적으로 선거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고,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도록 하며, 계

1) 「공직선거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第2號에 해당하는 經費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年度를 포함한다)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24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여야 하며,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제197조(選舉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舉)의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사유확정일부터 5일을, 연기된 선거와 재투표에 있어서는 늦어도 선거일공고일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2.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3. 선거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4. 선거에 관한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5. 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6.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7.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합계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고 선거일전 24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20대 대통령선거부터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일이 12월에서 3월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법에 의한 관리경비의 편성 및 배정일정이 상호 배치되는 문제가 있음.

즉, 현행법에 의하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선거 관리경비는 선거기간 개시일(2022. 2. 15.)이 속하는 연도인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2021. 12. 17.)이 속하는 연도인 2021년에 배정해야 하기 때문에 배정시기가 편성시기보다 앞서는 모순이 발생하게 됨.²⁾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법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 준비경비를 선거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2022년) 본예산이 아닌 선거실시 전년도(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음.

따라서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등 공직선거 선거관리경비의 예산 편성 및 배정시기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277조제1항

2)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의 선거일전 180일과 240일이 모두 2021년에 포함되기에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예비후보자 등록, 국외부재자 신고 등 일부 대통령선거 준비사무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의 전년도에 실시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부 경비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의 전년도 예산에 편성·배정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임.³⁾

개정안은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경비의 예산 편성·배정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현행과 개정안의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원칙 (모든경비)	계도홍보 단속경비	원칙 (모든경비)	계도홍보 단속경비	일부 준비경비
편성 연도	선거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	선거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
배정 시기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까지	선거일 전 240일까지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까지	선거일 전 240일까지	<u>선거일 전 120일까지</u>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준비 및 실시경비, 그 밖의 경비의 편성·배정 시기 조정으로 법과 괴리된 예산 운용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개정안에 공감하는 입장임.

3)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도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 외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일부 경비가 2021년 예산에 계상되었음.

문 의 처
02)6788-5343